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교육

1. 노인인권의 개념

1) 노인인권 신장의 공통적 요소

- ① 몸과 마음의 건강, 경제적 안정
- ② 가족, 친구, 이웃과의 좋은 관계 유지 즉, 나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상호존중하는 모습 필요

2) 인권이란?

-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총칭함

3) 인권의 실천

-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나(자기)’와 ‘남(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이 필요함

4) 노인인권이란?

- ①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②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③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에는
 -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 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2. 노인학대 관련 개념 등과 유형 및 사례

1) 개념

- 1975년 영국에서 노인학대 첫 사례가 발표되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함
-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연구가 시작되었으며,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에서 노인학대를 법규화하면서 비로소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개입이 시작되었음

·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학대행위자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행하는 자
부양의무자	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할 의무가 있는 자로 노인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노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해당됨
보호자	노인을 보호자는 자로 부양의무자 및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



2) 노인학대의 신고

(1)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① 신고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 된 상담 및 신고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

② 재학대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로 2018년도 기준 외에 과년도 사례가 포함되어 있음

(2) 현장조사

- ①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최초의 방문을 의미함

② 응급학대 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노인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③ 학대 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 학대 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며,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실시.

④ 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응급 사례, 비응급사례, 잠재적 사례, 일반사례로 분류하는 과정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u>응급구조사</u> ,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u>요양직</u>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u>직군이 포함됨</u>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 등으로 분류됨.

출처 : 법제처 (www.moleg.go.kr)





(1)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유형	내용	예시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주먹 등으로 때린다. - 밀어서 넘어뜨린다. - 침대 등으로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 -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 -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 -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 등)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웃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care service)을 제공하지 않는다. - 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노인학대 유형	내용	예시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이 위협받는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중복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형이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2) 노인학대 방지 근거

· 노인학대의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에서 찾을 수 있다. 본 법 제39조6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하였음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 직군) 노인 학대를 인지한 경우

-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 및 신고한다.
-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한다.
-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 대처해야 한다.

